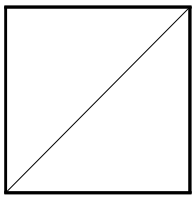
공 개



| 의안번호 | 제 109 호 |
|---|---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6. 4. 22.<br>(제 8 차) |

의결사항

# ㈜소리바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| 제 출 자 | 위원장 권 대 영 |
|---|---|
| 제출 연월일 | 2026. 4. 22. |

## 1. 의결주문

㈜소리바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2025.12.18.부터 前 코스닥 상장법인 ㈜소리바다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, 발견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□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증권발행제한 : ㈜소리바다 [前 코스닥상장법인] 3월

## 4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붙임 1>

□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0조, 제164조 제2항 제1호, 제429조 제3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

나. ㈜소리바다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 : <붙임 2>

(별지)

# ㈜소리바다에 대한 조치안

**증권선물위원회는 ㈜소리바다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0조 제1항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4조 제2항 제1호, 「동법 시행령」 제175조 제1호에 의하여 증권발행제한 3월을 부과한다.**

## 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㈜소리바다 [ 前 코스닥 상장법인]

- 대표이사 : ☆☆☆, □□□
- 사업자 등록번호 : 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
-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7, 3층 (신사동, 강남빌딩)

## □ 조치이유

○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의 분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

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('21.5.17.)보다 15일 경과한 '21.6.1.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<붙임 1>

# 관 계 법 규

##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**제160조(반기·분기보고서의 제출)**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"반기보고서"라 한다)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"분기보고서"라 한다)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59조제2항(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)·제4항·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
**제164조(조사 및 조치)**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,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1.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429조(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)**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,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(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(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2. 제159조제1항,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

## 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175조(금융위원회의 조치)**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
1.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

## 3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

### [별표 3] 증권·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

### 5.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가.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(1)부터 (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(4)에 따른다.

(1)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(가) 또는 (나)에 해당하는 경우

(나)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

(4)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(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)

| 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 | 상 | 중 | 하 |
|---|---|---|---|
| 상향조정사유 발생 | 12월 | 9월 | 6월 |
| 해당사항 없음 | 9월 | 6월 | 3월 |
| 하향조정사유 발생 | 6월 | 3월 | 1월 |

### [별표 2] 과징금 부과기준

## 4. 부과비율의 산정

가.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(2) 법 제429조제3항(정기보고서) 위반사항(다만,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기재위반 및 동 위반사실이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
| 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 | 상 | 중 | 하 |
|---|---|---|---|
| 상향조정 사유 발생 | 100분의 10 | 100분의 8 | 100분의 6 |
| 해당사항 없음 | 100분의 8 | 100분의 6 | 100분의 4 |
| 하향조정 사유 발생 | 100분의 6 | 100분의 4 | 100분의 2 |

나.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

(2) 비계량적 위반사항

(가) 일반기준

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·중·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.

| 구분 / 중요도 | | 상 | 중 | 하 |
|---|---|---|---|---|
| 주가변동률[주1] | | 200% 이상 | 50% 이상<br>200% 미만 | 50% 미만 |
| 주요경영사항[주2] | | 800% 이상 | 250% 이상<br>800% 미만 | 250% 미만 |
|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성 | | 검찰고발 | 검찰통보 | 경고 이하 |
| 증권신고서 | 증자 등의 금액 비율[주3] | 100% 이상 | 25% 이상<br>100% 미만 | 25% 미만 |
| 공개매수신고서 | 공개매수비율[주4] | 50% 이상 | 30% 이상<br>50% 미만 | 30% 미만 |
| 5%보고서 | 보고의무위반비율[주5] | 15% 이상 | 10% 이상<br>15% 미만 | 5%[주6]이상<br>10%미만 |
| 내부자거래 사전계획·철회보고서 | 보고의무 위반비율[주7][주8] | 3% 이상 | 2% 이상<br>3% 미만 | 2% 미만 |
| | 보고의무 위반금액[주7][주8] | 150억 이상 | 100억 이상<br>150억 미만 | 100억 미만 |

주1) 공시의무발생일(거짓기재·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,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) 전후 15거래일간(15거래일에 미

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,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.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.) 주가변동률 [{(당해종목 최고주가/최저주가)×100} - {(동일업종 최고주가/최저주가)×100}]

## 다. 감안사유 판단기준

| 구 분 | 조 정 기 준 |
|---|---|
| 상향 조정 사유 | ・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<br>・ 공시위반행위로 조치(경고 및 주의 제외)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|
| 하향 조정 사유 | ・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(다만,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,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. (생략)<br>・ 부도발생,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,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|

<붙임 2>

# ㈜소리바다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

## Ⅰ. 산정원칙

□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에 따라 별표 제3호에 의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최소 1월에서 최대 12월까지 부과

**≪ 증권발행제한 조치 양정기준 ≫**

| 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 | 상 | 중 | 하 |
|---|---|---|---|
| 상향조정사유 발생 | 12월 | 9월 | 6월 |
| 해당사항 없음 | 9월 | 6월 | 3월 |
| 하향조정사유 발생 | 6월 | 3월 | 1월 |

## Ⅱ. 산정결과

□ **증권발행제한 조치 : 3월**

| 구 분 | 중요도 | 감안사유 |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2021년 1분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| 하 | 해당사항 없음 | 3월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금융위원회 | 금융감독원 |
|---|---|---|
| 소관부서 | 자본시장조사총괄과<br>공정시장과 | 공 시 심 사 국 |
| 연 락 처 | 02-2100-2605<br>02-2100-2688 | 02-3145-8470 |